의안번호	제387호
의결연월일	2021. 10. 18.

-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0. 8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10. 8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10. 18.

제274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문화관광과장 : 정 택 규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국어기본법」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~제2조)
- 국어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국어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8조)

-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예산, 교육, 포상 등 국어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~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- 본 조례안은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국어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방법을 제시하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을 규정하여 공문서 작성 등 공공 언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언어생활에 모범이 되는 등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「국어기본법」의 목적과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O 없 음

5. 토론요지

O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O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O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O 없 음